

18세기 후반 順菴 安鼎福의 箕子 인식

金文植(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목 차

1. 머리말
2. 箕子에 대한 인식
 - 1) 箕子의 행적
 - 2) 洪範
 - 3) 井田
3. 箕子 중심의 正統論
 - 1) 上古史의 正統論
 - 2) 한국사의 正統論
4. 맷음말

1. 머리말

1773년에 安鼎福(順菴, 1712~1791)은 스승 李灝(星湖, 1681~1763)이 생존해 있을 때 함께 공부한 동문이자 이익의 조카이기도 했던 李秉休(貞山, 1710~1776)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나라의 일대 문자로 평가되는 이익의 「洪範說」을 『東史綱目』의 서문으로 하고

싶은데 그 문체가 서문의 형식이 아니므로 「홍범설」이 지어진 연유에 대해 간략한 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¹⁾ 이병휴의 답장은 이듬해 5월에 있었다. 이익의 만년에 『동사강목』을 완성한 안정복이 1762년에 서문을 요구한 사실과 스승께서 '箕子의 洪範을 우리 나라 문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지었으나 『동사강목』과 직접 연결시키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다. 이병휴의 답장은 全文 그대로 『동사강목』의 서문이 되었다.²⁾

본고는 이처럼 안정복은 물론이고 『동사강목』의 편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이익과 이병휴가 공감했던 箕子와 『동사강목』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³⁾ 본문에서는 『동사강목』에 반영된 안정복의 기자 인식을 기자 개인에 관한 것과 正統論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안정복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이익의 기자 인식도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2. 箕子에 대한 인식

안정복이 가장 강조한 기자의 역할은 우리 나라에서 中華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도록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山川이 구별되고 風氣가 다르며, 嗜欲이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1) 『順菴集』 권4, 「與李景協書」(1773).

“先生所著「洪範說」，實是東方一代文字，欲編於東史首張。而文非序體，敢請老兄，爲數行小跋于下，發揮先生本意。至望。”

2) 『東史綱目』 卷首, 「題東史篇面」.

3) 「題東史篇面」에서 이익은 '홍범을 우리 나라 문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이병휴는 '홍범의 가르침은 唐·虞·夏에서 殷·周를 거쳤고, 箕子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후 아직까지 남아있으므로 『동사강목』에서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자'라고 했다.

않는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우리 나라는 애초부터 민간의 습속이 순박하여 教化하기에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정복은 이처럼 교화하기 좋은 자질을 가진 조선인들을 가르쳐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의관과 문물을 중화의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聖人 기자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파악했다.⁴⁾

안정복의 기자 인식은 선배 학자들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는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돌보아 기자라는 仁賢을 보내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했으며, 井田法과 八條의 규약과 같은 기자의 가르침이 환히 빛난다’는 卞季良의 발언이나, ‘檀君 때에 人文이 드러나지 않아 오랑캐가 될 가능성성이 있던 것을 바로잡은 기자의 가르침은 중국에서 義·軒·堯·舜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는 李廷龜의 발언을 『동사강목』의 자료로 활용했다.⁵⁾ 안정복은 선배들의 인식을 이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교화 속에 살도록 한 것이 천여 년이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기자의 가르침은 점차 사라졌지만 예의의 근본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孔子가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이나 역대 사서에서 우리나라를 ‘君子國’이라 부른 것이 결국은 기자의 가르침 때문이라 하여 조선 문화의 우수성이 기자에서 연원한 것으로 파악했다.⁶⁾

이하에서는 안정복의 기자에 대한 인식을 箕子의 행적, 洪範, 井田

4) 『東史綱目』 권1상, 癸丑. 馬韓(B.C. 128).

“山川區別，風氣殊異，嗜欲不同，言語不通。聖人因時設教，所以達其志而通其俗也，”
윗책, 附上上, 考異, 「箕準」。
“東方古初，民俗淳古，而箕子立教，則丕變風動。其衣冠文物，必有如上所言者矣。『後漢書』亦云，天性柔順，易以道御，冠弁衣錦，器用俎豆云。則此必箕氏治化之及而然也。”

5) 윗책, 권1상, 戊午. 箕子四十年(B.C. 1083).

6) 윗글.

“按。皇天眷佑我邦，太師東來，篤我以彝倫，教我以禮樂，使人淪肌浹骨，涵育於大化之中。雖其迹已遠，其言已湮，而民之受教而復習者，歷千祀而不泯。傾覆于四郡二府之際，夷于三國，佛于羅·麗，而其禮義之根於心者，則愈久不替。是以聖人有欲居之意，前史有君子之稱，豈徒然哉？莫非太師之教使然也。”

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箕子의 행적

안정복은 기자가 B.C. 1175년(丙戌)에 출생하여 B.C. 1083년(戊午)에 93세로 사망했으며 생존한 시기나 나이가 周의 武王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洪萬宗의 『東國歷代總目』을 따른 것이었는데,⁷⁾ 문제는 기자와 무왕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었다. 무왕과 관련된 기자의 행적에서 안정복이 중시한 것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었으니 『상서』에 나오는 ‘我罔爲臣僕’의 의미, 무왕이 기자를 방문하여 洪範을 물은 시기, 『사기』에 나오는 ‘封而不臣’과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한 일[朝周]에 대한 해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문제는 『尙書』「微子」편에 나오는 기자의 발언 중에서 “商今其有災，我興受其敗. 商其倫喪，我罔爲臣僕.”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마지막의 ‘我罔爲臣僕’에 대해 『尙書集傳』에서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臣僕이 될 리가 없다’고 주석했고,⁸⁾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기자는 무왕의 封함을 받지 않았고 주나라에 조회한 일도 없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안정복은 여기서의 ‘我’는 ‘기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通稱이며, ‘罔’은 ‘어찌 ~ 아니하랴[豈不]’라는 反語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구절은 ‘商(殷)나라에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 화를 입을 것이다. 상이 망한다면 우리들이 어찌 남의 臣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되며, 이는 殷나라가 망하게 됨을 안타깝게 여긴 말이지 무왕의 봉함을 받거나 주나라에 조회한 것과는 상관없는 말이 된다.⁹⁾ 안정복이 罔을 반어로 해석한 것은 이

7) 윗책, 附上上, 考異, 「箕子薨」.

8) 『書集傳』商書, 「微子」.

“[注] 商, 今其有災, 我, 出當其禍敗. 商若淪喪, 我斷無臣僕他人之理.”

의의 가르침을 수용한 결과였다.¹⁰⁾

둘째, 무왕이 기자에게 홍범을 물은 시기는 역대 기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기자의 의리론과 관련된 문제였다. 『사기』에서는 ‘무왕이 은을 이기고 나서 기자를 방문하여 홍범을 들었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으나, 『상서대전』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나자 무왕이 조선에 봉했고, 기자는 臣禮 때문에 주나라에 조회하자 무왕이 홍범을 들었다’고 했다.¹¹⁾ 기자가 홍범을 강론한 시기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정복은 『사기』의 기록을 따랐다. 그는 무왕이 은나라에 들어가 기자를 석방하고, 그 다음에 기자를 방문하여 홍범을 물었으며, 무왕의 尊禮가 진지하므로 기자는 홍범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기자에겐 적(무왕)을 막아야 할 책임이 없고 강제로 항복하는 굴욕도 없었으니, 굳이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의리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었다.¹²⁾

한편 기자의 의리론과 관련한 해석은 「홍범」편 서두의 구절(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의 ‘祀’는 ‘年’에 해당하는 은나라의 용어로 무왕이 방문한 해를 은의 연도로 쓴 것이 문제였다. 종래 학자들은 무왕이 기자를 방문한 것은 ‘무왕 13년’이며,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

9) 『東史綱目』附上下, 雜說, 「我罔爲臣僕辨」.

10)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1756).

“我罔爲臣僕”一句, 雜常依註解看. 今以先生反語之數, 求之, 尤爲切實, 故敢擄爲之說.”

11) 『史記』 권34, 「宋微子世家」.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武王曰, ‘於乎! 維天陰定下民, 相和其居, 我不知其常倫所序.’… 於是, 武王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 其後, 箕子朝周.”

『尚書正義』 권12, 洪範.

“武王勝殷, 殺受, 立武庚. 以箕子歸, 作洪範. [疏] 書傳云, ‘武王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箕子既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來朝, 武王因其朝而問洪範.’”

12) 『東史綱目』附上下, 雜說, 「我罔爲臣僕辨」.

조하기 위해 ‘13祀’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안정복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史書에서 한 해를 두 가지 방식(祀, 年)으로 기록하는 것은 筆法이 아니며, 무왕이 은을 정복한 후에 방문한 것이라면 유학의 도를 전하는 일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군신간의 의리상 홍범을 講論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 해는 은나라 紂 13祀이며, 당시 무왕은 西伯의 世子로 있으면서 王國인 은에 일이 있어 왔다가 기자에게 홍범을 물은 것으로 해석했다.¹³⁾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편찬하면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홍범」편은 주나라의 역사를 다룬 周書 중에서도 「泰誓」·「牧誓」편 다음에 나오는데다가 해석상에도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무왕이 기자를 직접 방문했으니 기자가 몸을 굽힌 것은 아니고, 대화할 때에도 무왕을 ‘너’[而 汝]라 하고 자신을 ‘나’[我]라 했으니 기자는 끝내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¹⁴⁾

셋째, ‘封而不臣’과 ‘朝周’ 역시 기자의 의리론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안정복은 무왕이 기자가 죽지 않자 그를 신하로 삼지 않는 지역[不臣之地], 즉 주나라가 직접 다스리는 五服의 범위를 넘어선 지역인 조선에 封했고, 기자는 그 담례로 주나라의 조회에 참석했는데 무왕은 기자를 虞賓의 禮, 즉 舜이 堯의 아들인 丹朱를 대접한 것과 같은 예로 대우했다고 해석했다.¹⁵⁾

13) 『順菴集』 권3, 書, 「與邵南尹丈東奎書」(1747).

“愚疑十三祀者，紂十三祀。而武王以西伯世子。有事于王國。聞箕子通範學，就問之耳。其稱王，史追記故也。此未審如何。”

14) 『東史綱目』 권1상, 壬午. 箕子四年(B.C. 1119).

“箕子朝周。… 按。洪範一篇言‘王訪於箕子’，則王就而見之，不敢屈也。箕子稱武王曰‘而’曰‘汝’，自稱‘我’，終不臣周也。”

15) 윗책, 附上下, 雜說, 「我罔爲臣僕辨」.

“其不死而封之以不臣之地，朝之而待之以虞賓之禮。則箕子於此，必知所以處之矣。”

참고로 안정복은 『魏略』의 기록을 따라 기자는 주나라의 侯爵을 받았을 것으로 추

무왕이 기자를 봉했지만 기자는 무왕의 신하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바로 『동사강목』의 첫째 綱(殷太師箕子東來, 周天子, 因以封之.)이다. 안정복은 여기에서 무왕이 봉한 기자는 바로 ‘은의 태사’였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익의 지침을 수용한 것이었다.¹⁶⁾ 또한 그는 기자가 주나라의 조회에 참석했지만, 이는 기자는 주나라의 신하가 아닌 손님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⁷⁾

이상에서 안정복은 기자가 주 무왕의 신하가 된 적이 없고 은의 신하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기자는 뒷날 은나라 유민들이 亂을 일으키고 武庚이 은 왕실을 회복하려 해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정복은 이를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구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무왕이 은을 정벌한 것은 후세의 篡奪과는 구별되고, 무왕이 虞·夏·殷의 자손들을 王侯로 봉한 三恪의 조치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封한 것과는 달랐다. 즉 무왕의 조치는 모두가 至公無私하여 仁으로 귀결되었으므로 天命은 이미 주나라로 옮겨진 것이었다. 따라서 기자는 공적으로 천명을 따라 홍 범을 무왕에게 전수하고 은의 부흥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끝까지 절의를 지킨 것으로 해석했다.¹⁸⁾ 그러나 안정복은 후세 사람들이 마땅히 변혁을 해야 할 때인데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기자를 빌미로 하는 것은 오히려 성인을 모욕하는 것이라

정했다.(『東史綱目』附上上, 考異, 「朝鮮侯稱王」.)

16)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1757).

“東史各條, 謹聞命矣. 箕子東封事, 改云‘周封殷太師箕子於朝鮮’, 目亦當以此意改定耳.”

17) 『東史綱目』 권1상, 壬午. 箕子四年(B.C. 1119).

“宋曾鞏曰, 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而不臣. 曰‘朝周’者, 所謂於周爲客也. 按… 然則曷爲受封而朝周乎? 曰武王之封, 固在箕子去之之後, 猶以客禮待之, 故箕子亦朝周而不憚. 曾氏之說, 是矣.”

18)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1756).

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¹⁹⁾

2) 洪範

안정복의 홍범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인식을 계승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안정복은 이익의 「홍범설」을 『동사강목』의 서문으로 했는데, 이는 그가 「홍범설」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홍범설」의 내용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홍범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앞의 세 문단이다.²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홍범과 洛書에 관한 것이다. 이익은 洪範九疇와 낙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증거로 낙서의 位에서 生數인 2와 成數인 8을 서로 바꿀 수 있듯이 홍범에서도 2(五事)의 肅乂哲謨聖과 8(庶徵)의 肅乂哲謨聖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듣다. 다만 낙서의 본문은 1에서 9까지 9글자에 불과한데도 홍범은 ‘初一曰’에서 ‘威用六極’까지 65글자나 되는 것은 禹가 演出했기 때문이며, 홍범의 배열 순서도 낙서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본다.

둘째는 홍범과 기자에 관한 것이다. 이익은 홍범이 唐·虞·夏·殷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으며, 은나라가 쇠퇴하면서 哲人君子인 기자만이 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周의 文·武는 성인이 될 자질은 있었지만 西夷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는 傳聞이 상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범을 모르고 있다가 기자에게 듣고 난 이후 비로소 그 도를 실천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주는 멸망할 때까지 홍범을 지켰는데 周末에 지어진 「小旻」 시에 홍범의 본문(或聖或哲或

19) 윗글.

“然而使箕子，而當武王之時，處之固當如此。若如晚季，值變革之際，雍容自處，偷容苟合，而曰‘箕子亦當’云爾。則是誣聖也，不知聖人之道者也。”

20) 『星湖全集』 권41, 雜著, 「洪範說」.

謨 或肅 或父)이 나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셋째는 기자의 8조와 홍범에 관한 것이다. 이익은 기자가 조선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8조의 법규는 바로 홍범의 8정이며, 후대에 전해지는 8조 중의 3조는 8정 중의 司寇 임무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漢나라를 일으킨 張良의 三章도 바로 기자가 전한 8조 중에서 후대에 남은 3조와 같은 것으로 본다.

안정복은 이상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논술했다.

먼저 홍범과 낙서의 관계에 대해 안정복은 禹가 낙서를 본받아 홍범을 연역해 낸 증거로 大戴禮「明堂」편을 든다. 여기에는 2 9 4 7 5 3 1 8이라고 쓴 구절이 나오는 데 이것이 낙서의 수 배열과 일치하는 것에 착안한 견해였다.²¹⁾ 안정복은 또한 數의 시작인 1을 북방에 배치한 다음 여기에 하늘(양)의 수인 '3'을 계속 곱해서 나오는 수 $3(1 \times 3)$, $9(3 \times 3)$, $7(9 \times 3)$ 을 順방향(북→동→남→서)으로 배치하면 4 陽數가 四正方에 있게 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음수도 2를 서남에 배치한 다음 여기에 땅(음)의 수인 '2'를 계속 곱해서 나오는 수 $4(2 \times 2)$, $8(4 \times 2)$, $6(8 \times 2)$ 을 逆방향(서남→동남→동북→서북)으로 배치하면 4 陰數가 四隅方에 배치되게 된다. 안정복을 이를 일러 '位序와 起數의 자연스런 象'이라 했다. 또한 그는 낙서에서 서로 마주보는 수를 합하면 모두 10이 되고(1과 9, 3과 7, 2와 8, 4와 6), 나란히 있는 세 수를 합하면 모두 15가 되는 것에서 자연스런 法象이 만들어지므로 낙서의 수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판

21) 洛書의 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하단에서부터 차례로 「明堂」편에 나오는 순서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6	1	8
7	5	3
2	9	4

단했다.²²⁾

다음으로 안정복은 이익과 같이 기자가 시행한 8조의 법규는 바로 흥법의 8政으로 보았다.²³⁾ 그는 현재 전해지는 3조는 8정 중에서 司寇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8정 중에서 7가지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자가 司寇의 임무를 강조한 이유를 단군조선(前朝鮮)의 말년에 민간의 풍습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우선 폭력을 금하는 형벌을 가지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²⁴⁾ 또한 그는 기자의 8조 법규 중에서 현존하는 3조가 바로 漢 高祖의 約法三章이며, 이는 한나라를 건설하는 계책을 세운 張良이 기자의 자취가 남아있던 滄海君, 즉 三韓에서 구해서 중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²⁵⁾ 이렇게 되면 흥법은 기자에 의해 직접 周 武王에게 전수되고, 기자조선의 후예인 三韓에 의해 간접적으로 漢 고조에게 전해진 것이다.

3) 井 田

22) 『順菴集』 권6, 書, 「答權旣明書」(1772).

23) 『東史綱目』 권1상, 己卯. 朝鮮箕子元年(B.C. 1122).

“施八條之敎. … 按. 『漢書』所稱八條, 而只舉三條. 三條, 卽洪範中司寇事也. 箕子爲治, 必不舍洪範而他圖, 八條, 恐指八政而言也.”

윗책, 附上上, 考異, 「設禁八條」.

“箕子洪範, 其第三疇曰八政, 治國之道, 備矣. 史云八條, 或以是耶? 『漢書』所傳, 只有三條, 與漢祖約法三章同.”

24) 윗책, 附上下, 雜說, 「小旻詩」.

“且所謂八中三者, … 此不出於八政中司寇一科之內, 而所關者, 七也. 意者, 檀氏之季, 衰微垂亡, 民風乖亂. 故先以禁暴之政, 略示統禦, 此劉漢所以得三章之法也. 此必是殷王東面西怨南面北怨之大規模, 而箕子行之也. 豈非古帝王草昧戡亂之定制耶.”

三章의 법은 『漢書』「高帝紀」에 나오는 것으로 漢 劉邦이 秦나라를 이기고 關中에 들어가 父老들과 약속한 세 가지 금법을 말한다. 그 내용은 살인한 자는 사형, 남 을 해친 자와 도둑질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5) 윗책, 附上下, 雜說, 「辰國三韓說」.

“箕子八條, 所傳三條, 卽漢高約法三章. 漢之運籌, 張良所定, 又安知非滄海君得箕子緒餘, 而傳之耶? 滄海, 盖三韓之通稱, 非指今江陵一府也, … 良之力量, 足以辦局於海外, 時復闖發椎擊, 若弄之股掌間. 而況無捉模, 千古中華人, 無眼觀破? 余嘗從師友, 得是說, 故於此備言之.”

안정복의 井田에 대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그는 29세이던 1740년에 「井田說」이란 장편의 논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서 그는 정전을 周의 제도로 해석했다. 그는 周公이 成王을 보좌하면서 夏·殷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전을 만들었고, 정전제가 시행된 이후에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봉건제를 실시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軍制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²⁶⁾ 그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주로 『周禮』를 활용하고 보조 자료로 『孟子』, 『春秋公羊傳』의 何休注, 『漢書』 食貨志, 朱子說 등을 활용했는데, 이상의 중국 자료에서는 조선의 정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정복 역시 정전을 조선의 제도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안정복이 이익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정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1746년 10월, 안정복은 처음으로 이익의 집을 방문했고 함께 經史를 토론하는 가운데 『孟子疾書』에 수록된 정전에 관한 설을 소개받았다. 당시 이익은 이 글이 비록 주자의 견해를 논박했지만 주자의 충신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⁷⁾ 또한 안정복은 1757년에 이익과 『동사강목』의 편찬을 의논하던 중 경주에 있는 田制는 秦나라의 軫田과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때 안정복은 箕田에 관한 것은 일찍이 『맹자질서』에서 보았는데 이제 다시 경주의 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²⁸⁾

26) 『順菴集』 권19, 說, 「井田說」(1740).

“周公相成王，損益二代之制。修井地之法，建國於土中雒邑，而治天下。井地立而後，經界可正也。封建可設也，田有常制也，民有恒產也，學校以興也，軍制以立也。其經理規模，廣大周密，雖生千世聖遠言涇之後，方冊具存，可考而知矣。”

27) 윗 책, 권16, 「函丈錄」.

“因論孟出『疾書』，論春王正月及井地辨，以示之。笑曰，此駁朱子一大忘論，卽欲爲朱子忠臣之意也。恐朱子見之，不大非斥也。”

28) 윗 책,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1757).

“箕田說，曾於『孟子疾書』中，見之。今又伏承慶州田制，本秦轄田之教，伏幸。”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韓百謙의 箕田論을 채용했다. 그는 『동사강목』 본문에서 조선에 온 기자는 은나라의 제도를 사용했는데 그 遺址가 평양의 외성 안에 남아있다고 詢하고 한백겸의 「箕田說」을 全文 인용했다.²⁹⁾ 한백겸 설의 특징은 ‘田’자형으로 된 夏·殷의 제도와 ‘井’자형으로 된 周의 제도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양의 토지가 ‘田’자형으로 된 것은 夏·殷의 제도이기 때문이며, 평양의 含毬門·正陽門에서 이어지는 9畝路와 3畝路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는 가로 세로 각 4개씩 16개의 田자형 토지는 先天의 方圓 원리와 『漢書』「刑法志」의 기록(四井爲邑, 四邑爲區, 四區爲甸, 甸有六十四井.)이 반영된 증거라고 주장했다.³⁰⁾

또한 안정복은 이익의 정전설을 수용하여 『동사강목』의 雜說에 수록했다. 이익의 설은 은대에 들어와 정전제가 처음 실시되었다는 주자의 견해와 은대와 주대의 제도를 구별하는 한백겸의 설을 모두 비판한 것이었다.³¹⁾ 이익은 주자가 평양에 있는 箕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의 주석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하면서 삼대의 토지는 모두 정전형이라고 주장했는데,³²⁾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은·주의 토지는 모두 정전형이지만 크기가 달랐다. 하의 토지는 정전형의 1區 안에 4개의 小區가 있었고 1소구의 크기는 地方 50步, 1井을 담당한 인원은 36夫(9×4)였다. 은의 토지는 하의 2小區를 합친 것으로

29) 『東史綱目』 권1상, 己卯. 朝鮮箕子元年(B.C. 1122).

“定田制，教民田蠶。箕子用殷田制，教民以田蠶織作。[井田遺址，在今平壤府南外城內.]”

30) 윗글 ; 『箕田攷』「箕田說」.

31) 『孟子集註』「滕文公上」.

“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徹者，徹也。助者，藉也。[注] 商人始爲井田之制，以六百三十畝之地，畫爲九區。”

32) 『孟子疾書』「滕文公上」3章。

“我國平壤，尙有箕子遺制。田皆四區同溝，如田字樣。其必古制之如此，而惜乎朱子之所未之見也。夏后之分九州瀋畎澮，已成畫井之制，故夫子亦云‘禹盡力乎溝洫。朱子註『書』及『論語』兩書，既皆以井地爲解。而小康一成之說，又是左契，則井非殷人之所創也，明矣。”

로 토기의 크기가 100步×50步였으며 1井을 담당한 인원은 18夫(9×2)였다. 주의 토지는 하의 4小區를 합친 것으로 토지의 크기는 地方 100步이며, 1井의 인원은 9夫이다. 여기서 은의 토지가 폭과 너비가 다른 것은 하의 제도를 따랐기 때문인데, 기자는 조선에서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地方 70步로 된 4개의 區를 하나의 단위로 했다. 여기서 地方 70步는 은의 100步×50步에서 긴 곳을 자르고 짧은 곳을 보충한 것이다.³³⁾

안정복은 주로 한백겸의 설을 채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한백겸의 설을 따라 기자가 평양에서 실시한 토지제도는 은의 제도이며, 토지의 모양이 ‘井’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井田을 구획했다[畫井田]’고 하지 않고 ‘田制를 정했다[定田制]’고 표현했다. 안정복이 한백겸이나 이익의 설을 채용하여 기자의 정전을 설명한 것은, 중국의 기록에 제한받지 않고 조선에 전해지는 傳聞과 기록을 근거로 하여 정전과 조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³⁴⁾

18세기의 조선 지식인들은 中華의 古法이라 할 수 있는 정전의 유제가 조선에 전해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790년(정조 14)에 『箕田攷』를 편집한 李家煥이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후 정전제의 흔적이 사라져 맹자가 천하를 돌아다녔어도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평양의 箕田에는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³⁵⁾ 안정복이 조선에 남아있는 정전의 유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은 조선이 가진 중화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33) 『東史綱目』附上下, 雜說, 「題久菴韓氏箕田說後」.

34) 윗책, 附上上, 考異, 「平壤井田」.

“東人諸說，皆云‘箕子井田’。然其田與井字異，故今只曰‘定田制’，而不曰‘畫井田’。更按箕子田制，不見中國史，故『通鑑』不取。而東方相傳之語，不可誣矣。”

35) 『箕田攷』卷首, 「箕田攷序」.

“古昔，聖王御世出治，道莫尙於洪範，政莫先於經界。箕子陳洪範，日星千古，而畫經界，迄今晦昧不彰，何也？洪範陳之武王，經界畫於偏邦故也。然周室既衰，諸侯悉慢其經界。孟子引詩而曰，‘由是觀之，雖周亦助’，是轍環天下，而未嘗一見也。獨平壤箕田，疆理具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3. 箕子 중심의 正統論

안정복은 『동사강목』 편찬의 첫 번째 목적을 한국사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 두었다. 그는 『동사강목』의 서문에서 역사가의 大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統系를 분명히 한다는 정통론이었고,³⁶⁾ 「범례」에서도 정통론에 해당하는 ‘통계’를 제일 앞에 배치했는데 이는 통계가 바로 역사서의 첫째 의의였기 때문이다.³⁷⁾

그런데 정통론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은 上古史의 정통론에 있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의 편찬이 한창 진행되던 1756~58년에 이 병휴에게 보낸 편지에서 『東國通鑑』의 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동사강목』에서 표출한 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여기에서 단군, 기자, 마한을 정통의 처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衛滿은 篡賊이므로 정통이 될 수 없다는 것, 위만조선의 大臣인 成己나 마한의 장수 周勤이 끝까지 절의를 지킨 것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모두 상고사의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³⁸⁾

본 절에서는 먼저 檀君朝鮮에서 箕子朝鮮, 馬韓으로 이어지는 상고사의 정통론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전체의 정통론을 정리하기로 한다.

36) 『東史綱目』 卷首, 「東史綱目序」.

“大抵，史家大法，明統系也，嚴纂逆也，正是非也，褒忠節也，詳典章也。”

37) 윗 책, 「凡例」. “凡統系，爲史家開卷第一義。”

38)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與李貞山書」(1758).

“(東史) 其大意，則尊正統，崇節義，謹筆例。檀·箕·馬韓，爲正統之首，而衛氏，三國分註。又右渠大臣成己，據王儉城，不降死之。故馬韓將周勤，起兵討百濟，不克死之。此諸史之削而不論者，而僕之所表出者也。”

1) 上古史의 正統論

① 檀君朝鮮

안정복은 檀君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신성한 정치를 펼쳤고 그 歷年도 천 년이 넘으므로 『동국통감』처럼 外紀가 아닌 本紀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다.³⁹⁾ 실제로 『동사강목』의 편찬에 착수 할 무렵에는 단군조선에 관한 기사를 편년체로 작성하려는 의욕까지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료였다.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은 古記 류와 이에 근거한 『三國遺事』의 기사에 불과했는데, 허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안정복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고,⁴⁰⁾ 의심스런 기록에 근거해서 立綱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의 견해이기도 했다.⁴¹⁾ 결국 안정복은 단군조선에 정통을 부여하되 그 기사는 기자조선이 시작되는 연도의 目으로 다루었다.⁴²⁾

안정복은 神人이 태백산의 檀木 아래에 내려오자 백성이 이를 君 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단군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桓因帝釋’이란 칭호는 불경인 『法華經』에 나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고, 평양 九月山에 있는 三聖祠에 모신 三聖 중에서 桓因·桓雄은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하여 단군 이전의 신비한 기록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다.⁴³⁾ 그러나 그는 중국 사서에 나오는 9종의 東夷에 관한 기

39) 『東史綱目』 卷首, 「凡例」 統系.

“檀君，首出御國，箕子，肇興文物，各千餘年。神聖之治，宜有不可混者。”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與李貞山書」(1756).

“編年之書，有『通鑑』一部，而全無儀例。檀·箕，雖無事實，其可置於外紀，同于傳疑之例耶？”

40) 『東史綱目』 권1상, 己卯. 朝鮮箕子元年(B.C. 1122).

“東方古記等所言檀君事，皆荒誕不經。…若是不經之說，一切不取，庶欲洗刷襲謬之陋習爾。”

41) 姜世九, 1994, 『東史綱目研究』 pp.101~104.

42) 『東史綱目』 卷首, 「凡例」, 統系.

“今正統，始于箕子，而檀君附見于箕子東來之下。”

사를 신뢰했다. 그는 동이의 종족이 여럿이지만 그들의 거주지는 대략 遼·瀋 안팎의 땅이므로 단군조선도 그 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았고 『後漢書』 『通典』 『竹書紀年』 등에 나오는 동이 관련 기록을 적극 수용했다.⁴⁴⁾

안정복은 단군조선은 唐나라 堯 25년(戊辰, B.C. 2333)에 개국하여 殷나라 武丁 8년(甲子, B.C. 1317)에 멸망했으므로 그 역년은 1,017년이라고 보았다.⁴⁵⁾ 또한 그는 단군이 백성에게 編髮(머리를 땋는 것)과 蓋首(모자를 쓰는 것)를 가르쳤고, 군신·남녀간의 윤리, 음식, 거처와 같은 제도들도 이 때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단군조선에 대한 안정복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尊周論과 事大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는 단군이 堯가 재위한 시기에 압록강 안팎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곳은 성인의 교화가 미치는 지역에서 멀지 않았으므로 冠弁과 祖豆와 같은 中夏의 풍습이 있었다고 보았다⁴⁶⁾ 또한 그는 夏의 禹가 즉위하여 제후들을 塗山으로 모으자 단군은 아들 夫婁를 파견하여 조회에 참석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⁴⁷⁾ 즉 그는 단군조선이 요와 같은 시대에 건국되어 성인의 교화를 간접적으로 받았고 夏나라에 대해 사대정책을 편 것으로 해석했다.

43) 윗책, 권1상, 己卯. 朝鮮箕子元年(B.C. 1122).

44) 『順菴集』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1756).

“檀君紀, 備論九夷事者, 似不合於檀君. 而東方原有九種夷, 則當不沒其實, 安知檀君亦備九夷之一耶?”

『東史綱目』附上上, 考異, 「九夷」.

45) 윗책, 卷首, 「檀君箕子傳世之圖」.

46) 윗책, 권1상, 己卯. 朝鮮箕子元年(B.C. 1122).

“檀君, 與堯并立, 跨居鴨綠內外, 去聖人之化不遠. 是以其冠弁·俎豆, 有中夏之風. 而箕子東來, 又施仁賢之化. 夫子之浮海欲居, 盖以是也.”

李瀆은 檀君과 爛이 다같이 東夷人이며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단군은 일찍부터 순의 교화를 받았던 것으로 보았다.(韓永愚, 1989, 「18세기 전반 南人 李瀆의 史論과 韓國史 理解」, 『朝鮮後期史學史研究』 pp.208~211.)

47) 윗글 ; 윗책 附上中, 怪說辨證.

“古記云,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婁. 禹會塗山, 遣夫婁朝焉. 後爲北扶餘王.”

② 箕子朝鮮

안정복은 기자조선을 ‘後朝鮮’으로 표현하여 기자조선 이전에 단군조선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는 그는 기자조선이 周 武王 13년(己卯, B.C. 1122)에 건국하여 40세인 箕準이 馬韓의 왕이 된 漢惠帝 2년(戊申, B.C. 193)까지 역년이 930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⁴⁸⁾

안정복이 기자조선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건국년이었다. 이는 『삼국유사』에서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바로 藏唐京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여 마치 기자가 단군을 직접 공격하여 국가를 건설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와 같은 仁聖이 남의 나라를 冒占할 리가 없다고 단언하고,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것은 단군이 죽은지 196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당시 단군조선은 이미 쇠팔했기 때문에 기자가 황무지에서 새로운 국가를 개창한 것이라고 밝혔다.⁴⁹⁾

안정복은 우리 나라의 풍습 가운데 大冠을 쓰는 것, 흰옷을 입는 것, 여인들의 머리 장식 등은 기자의 遺制라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의 筏子는 은나라의 邑와 章甫의 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후대에 모자의 높이가 올라가고 옆 둘레가 넓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자가 흰말을 타고 주나라에 조회를 간 것이나 고려의 士女服이 흰색을 승상한 것, 혼인에서 반드시 흰말을 사용하는 것은 흰색을 승상하는 은나라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보았고, 신라·백제·고려 여인들의 머리 모양 역시 은나라에서 전해진 제도로 보았다.⁵⁰⁾ 안정복의

48) 윗책, 卷首, 「檀君箕子傳世之圖」.

49) 윗책, 附上上, 考異, 「檀君避箕子移藏唐京」.

“『遺事』…今以『經世書』考之，自堯戊辰，至武王己卯，一千二百十二年。御國千五百年之說，誕不足辨矣。且箕子仁聖，豈有冒占人國之理？其誣聖甚矣。蓋彼已衰亡，故箕子之來，披草萊開創耳。”

윗책, 卷1上, 己卯. 朝鮮箕子元年.

“檀君初都平壤，後徙白岳。檀君薨後一百九十六年，而箕子東封。”

50) 윗책, 附上下, 雜說, 「箕子遺制」.

이러한 견해는 이익의 설을 채용한 것이다.⁵¹⁾

한편 안정복은 은의 유민인 伯夷·叔齊가 기자와 서로 교유했다는 설을 지리적 근거와 의리론에 의거하여 수용했다. 이 설은 황해도 해주의 首陽山 밑에 伯夷·叔齊를 모신 清聖廟가 있고, 吳澐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평양을 찾아와 기자를 방문하곤 했다’고 기록한데서 제기된 것이었다. 안정복은 『一統志』에서 이들의 묘가 있다고 하는 永平府는 옛 遼西 지역이므로 우리 땅과 가깝다는 점, 백이가 紂의 폭정을 피해 살았다고 하는 北海濱의 ‘북해’가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遼海와 우리 나라의 兩西(평안도, 황해도)로 둘러싸인 바다를 통틀어 말했을 것이라는 점, 백이가 殷末에 紂를 피해 살았던 곳에서 周나라를 피해 살면서 기자와 상종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 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당시 기자의 절의와 명성은 천하에 알려진 것이므로 주나라에서 도망친 사람이 기자조선을 버리고는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⁵²⁾

안정복은 기자가 사망한 이후의 역사에 대해 존주론과 사대주의에 입각한 해석을 했다. 그는 燕의 伯이 ‘王’이라 칭하자 조선의 侯가 이를 공격하려 한 사건에 대해 중국의 통치 지역인 五服의 밖에 있는 조선이 尊周를 위해 僚號를 사용한 燕을 공격하려 했다고 서술했고, 뒤에 조선에서 ‘왕’이라 칭한 것은 尊周의 마음이 아니라고 해석했다.⁵³⁾ 또한 조선이 ‘왕’을 칭한 이후로 자손들이 점차 교만하

51) 『順菴集』 권16, 「函丈錄」.

“(又曰) 殷冠曰‘冔’, 太師東來, 其冠冔. 漸漸失制而爲笠. 笠古高句麗所稱‘折風巾’也. 中國人, 今猶以東人笠子, 爲折風巾, 巾名蓋久矣.”

『星湖全集』 권41, 雜著, 「洪範說」.

52) 『東史綱目』 附上下, 雜說, 「伯夷叔齊與箕子相從」.

“伯夷嘗避紂居北海之濱, 今中國無北海, 而遼海居中國之東北, 今我兩西之海, 與遼海相連, 則通謂之北海, 可矣, 避紂而居於北海, 則避周而還歸舊隱, 其勢宜然, … 想夷齊, 既去中國, 若返歸鄉國, 則更似有嫌, 故自故國而東出, 與箕子相從, 畢命于我首陽, 末乃歸葬故國, 以致首丘之意, 事理之誠然者矣, 不可以氓俗流傳之言而棄之也. 且武王不臣箕子, 而封之朝鮮, 則其節義聲光, 震耀一時, 逃周之士, 捨箕子而安歸乎?”

53) 윗 책, 권1상, 戊戌. 朝鮮紀年(B.C. 323).

고 포학해졌으며,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기자의 40世孫인 王否가 秦에 복속했으나 조회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⁵⁴⁾

안정복은 燕人 衛滿이 항복하자 그를 받아들여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한 것은 사대 정책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小國이 大國을 섬기고, 약자가 강자에 복속하며, 夷狄이 중국에 귀의하는 것은 불변의 正理라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는 소국으로 中華를 가까이하여 대국의 원조를 잊지 않아야 자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중국의 叛民이라 할 수 있는 위만을 받아들여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한 것은 바로 중국과 원수가 되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⁵⁵⁾

③ 馬 韓

안정복은 위만에게 밀려난 箕準이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金馬郡(지금의 익산군)에 도읍을 세운 이듬해(B.C. 129)를 기준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준이 마한에 오기 이전에도 三韓 지역에는 마한의 54개국을 비롯하여 총 78개의 小國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정통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이 옮겨간 이후를 정통으로 삼은 것이다. 안정복의 마한정통론은 이익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⁵⁶⁾

안정복이 기준의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한 것은 그가 기자조선의

“至是，燕易王僭號，欲東略地。朝鮮侯，欲與兵伐燕，以尊周室。大夫禮，諫之乃止。…按。是時，周爲共王，而燕伯稱王，其罪當伐。朝鮮侯，眇然在荒服之外，欲舉問罪之師，其意大矣。…且問燕之罪，以其僭號，而未乃尤而效之，其尊周之心，果安在哉。”

李灤도 朝鮮侯의 燕 정벌 시도를 尊周의 차원에서 해석한 바 있었다.(『星湖僕說』 권23, 經史門, 「朝鮮侯」, “謂之‘侯’，世世受封也。謂之‘周襄’，則春秋之際也。伐燕者，欲其尊周，先自伐燕始也。以藪尗小邦，居遐裔之外，豈不知晉·楚之不可敵？爲其可爲而已，置勝負於度外，其意，與隣國侵攻而不量力者，異矣。”)

54) 윗 책, 권1상, 庚辰. 朝鮮紀年(B.C. 221).

“初朝鮮稱王，其後，子孫稍驕虐。…及秦并天下，王否畏秦，遂服屬於秦，不肯朝會。”

55) 윗 책, 권1상, 丙午. 王準二十六年(B.C. 195).

‘按。以小事大，以弱服強，以夷狄歸中國，此不易之正理也。我東地偏國小，昵近中華，有不失大國之援，然後可以自存矣。衛滿聚黨數千人，乘亂出奔，則是中國之叛民也。王乃容受叛民，使守西鄙，欲與大邦爲讐。’

56) 『星湖全集』 권47, 雜著, 「馬韓正統論」.

후예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준이 마한을 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기자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정통을 부여하며, 이는 주자가 『資治通鑑綱目』에서 『資治通鑑』이 정통으로 삼은 魏 대신에 蜀漢을 정통으로 삼은 것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⁵⁷⁾ 그리고 그는 林象德이 『東史會綱』에서 기준의 마한을 魯·衛에 비견하여 정통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⁵⁸⁾

한편 안정복은 위만조선과 四郡·二府를 마한의 기년 아래에 附錄하는 방식을 택해 마한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만을 단군·기자와 함께 ‘3조선’으로 불러 덕이나 의리까지도 대등한 것으로 다루었던 『동국통감』을 비판하고 위만을 왕위를 찬탈한 僮國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사군·이부는 정통성을 가진 大國인 漢나라가 설치한 것이지만 그 영역은 조선의 故土이므로 그 사실을 마한에 부록하고 영역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한다고 밝혔다.⁵⁹⁾

안정복은 기준 즉 武康王이 B.C. 192년에 마한을 건국하고 新王莽 원년(己巳, 9)에 백제에 편입되어 역년이 202년이며, 여기에 기자조선의 역년을 합하면 총 1,131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⁶⁰⁾ 그가 기자조선과 마한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마한을 기자조선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안정복은 특히 箕氏의 傳世가 천년을 넘는데도 箕君의 역년을 언급하지 않았던 『삼국사기』와 『三國史略』을 비판했던 崔溥의 발언을 『동사강목』에

57) 『東史綱目』 卷首, 「東史綱目凡例」 統系.

“箕準雖失國南奔，而攻破馬韓，再造邦國，使太師之祀不替，則是亦正統之所歸。如『綱目』蜀漢例，書之。”

58) 윗글.

59) 윗글.

60) 윗책, 卷首, 「檀君箕子傳世之圖」.

안정복은 백제가 마한을 습격했다고 마한의 땅이 일시에 백제에 복속된 것은 아니며, 三韓이 이후에도 전해지다가 삼국이 강성한 뒤에는 분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윗책, 附上下, 雜說, 「三韓後說」. “余以爲，三韓，至後世猶有存者，三國強盛後，爲其所分。至若濱貊·沃沮之屬，亦猶是也。”)

그대로 수록하여 자신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⁶¹⁾ 또한 안정복은 기준이 마한의 왕이 된 이후 그의 자식, 벗, 친족들이 마한의 ‘韓’을 본따 韓氏라고 한 사실과 마한이 멸망한 이후 기준의 후손은 없어졌지만 마한 사람 중에 그의 제사를 받드는 이가 있었다는 전문을 기록하는 등 기자와 관련되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었다.⁶²⁾

안정복은 마한의 역사를 사대주의에 입각해 해석하고, 중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선왕 右渠(위만의 손자)가 한의 遼東都尉 涉何를 죽인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 나라가 중국의 칭찬을 받고 영토를 잘 지켜 온 이유를 역대의 事大 정책에서 찾고, 위만조선의 처신은 專心으로 사대했던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과 달라 그 역년이 86년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⁶³⁾

안정복이 사대주의를 강조했다고 해서 중국의 침략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 나라가 지형상 삼면이 바다이고 한쪽은 육지로 연결되어 동·남으로는 왜가, 서·북으로는 중국(漢·魏·隋·唐)이 침략한 경험이 있는데, 국토를 수호하는 방안은 중국과 화친하는 한편으로 海防과 국경지역의 방어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⁶⁴⁾ 또한 마한의 왕이 熊川柵을 세운 뼈제를 꾸짖어 이를 허물게 한 것은 마한에게 名義가 있었기 때문인데, 마한이 이 기회에 자강책을 실시했더라면 78개국이 다시 마한에 조공을 바쳤을 것이라고

61) 윗책, 권1상, 己巳, 馬韓(A.D. 6).

62) 윗책, 권1상, 戊申, 王準二十八年(B.C. 193).

“準王馬韓，不與朝鮮相往來。其子友親留在國，因冒姓韓氏。”

63) 윗책, 권1상, 壬申, 馬韓(B.C. 109).

“東方，自檀君立國，專心事大，至于箕子，白馬朝周，後君亦欲伐燕，以尊周室。至此，已爲劉漢，而一脈拱北之誠，終始不懈。此東人之所以見稱於中國，而亦能保守邦域者也。至於衛氏，與檀·箕規模自別，而旋致覆滅，由不得其衛，故也。”

64) 윗글.

“夏六月，漢伐朝鮮。… 按。我東，三邊環海，一隅連陸，誠四面受敵之國也。東南緣海，接近倭域，乘船寇略，無所不到。又與中國失和，則陸從遼·碣，水由渤海，漢·魏·隋·唐之事，可鑑也。知此，則海防邊圉之策，當加之意，要不使挑釁而致變也。”

하여 국가의 보존을 위한 부국강병책을 중시했다.⁶⁵⁾

안정복은 중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우리 나라와 중국은 산천에 의해 천연적으로 경계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가 중국의 군현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唐虞(堯舜)·三代에 皮服을 공물로 바치고 樂舞를 바치면서 사대를 했으나 중국의 땅이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하고, 漢武帝가 조선에 滄海郡을 설치한 것은 덕이나 혜택을 베풀지 못한데다 빼앗은 땅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실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뒷날 唐高宗이 고구려·백제를 현으로 삼으려 한 것이나 元世祖가 고려에 行省을 둔 것, 明太祖가 鐵嶺衛를 두려 한 것 등은 모두가 한 무제의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聖王의 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⁶⁶⁾ 그리고 조선에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仁賢의 교화가 변하여 犯禁이 60여 조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국의 장사꾼이 밤에는 도둑으로 변해 풍속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라 하여 조선의 문화적 우수성과 중국의 침략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다.⁶⁷⁾

2) 한국사의 正統論

65) 윗 책, 권1상, 丙寅, 馬韓(A.D. 6).

“箕準當失國奔敗之餘，能攻破馬韓，復稱王號，則其才有足稱者，至于後嗣微弱，不能自振，使城內瓜分，羅·濟坐大。王綱陵夷，境土日蹙，國不國而君不君矣。… 王於此時，修德政，振紀綱，甄賢能，鍊兵將，內自強而外禦侮，則向者七十八國之修職貢者，必復奔走於馬韓之庭。而偷安姑息，不數年而亡滅，可勝歎哉？”

66) 윗 책, 권1상, 癸丑, 馬韓(B.C. 128).

“我東與中華，山川隔絕，是天生別區，不可列於中國之郡縣，明矣，是以唐·虞·三代之際，惟聞貢其皮服，獻其樂舞，羈縻之而已。未聞并吞割裂，必欲爲中國之地而後已也。漢武帝，窮兵瀆武，惟事四夷，地雖廣而德不務，德雖加而惠不暢，徒弊中國，得不補失，顧何益哉？”

67) 윗 책, 권1상, 癸酉, 馬韓(B.C. 108).

“四郡，自內屬以後，取吏於遼東，吏見民無閉藏。及賈人往者，夜則爲盜，俗益薄，犯禁多至六十餘條。仁賢之化，變矣。”

① 『資治通鑑綱目』의 정통론

안정복의 한국사 정통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資治通鑑綱目』(이하 『통감강목』이라 함)의 정통론을 검토해야 한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편찬하기 훨씬 이전부터 『통감강목』을 읽고 치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가 청년 시절부터 교유한 鄭壽延에게 『통감강목』의 독서를 권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소개한 것이나 이익과 『동사강목』의 편찬을 의논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통감강목』을 열심히 읽었는데 필법에 의심나는 것이 많고 본문의 서술이 범례와 어긋나는 것이 많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⁸⁾ 안정복은 『통감강목』을 통해 중국사를 연구함으로써 『동사강목』의 편찬을 위한 기초와 계기를 마련했다.⁶⁹⁾

안정복은 朱子가 정한 『통감강목』의 범례를 모범으로 하여 『동사강목』의 범례를 작성했고, 우리 나라의 형편이 중국과 다른 부분에서만 별도의 범례를 만들었다.⁷⁰⁾ 다음의 <표 1>은 『통감강목』과 『동사강목』의 범례를 비교한 것인데, 『동사강목』에서 ‘罷免’을 삭제하여 ‘廢黜’에 포함시키고 附卷에 포함된 考異·怪說辨證·雜說·地理考·分野考를 설명한 雜例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두 책의 범례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정복은 주자가 『통감강목』의 범례에서 제시한 大義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주자의 제자인 趙師

68) 『順菴集』 권4, 書, 「與丁永年壽延書」(1746).

“『綱目』之工, 至于何代? 平生最喜此書, 故用以相勸. 而竊念先儒之言, 必內經而外史者.”

윗 책, 권2, 書, 「上星湖先生書」(1753).

“侍生平日, 於『綱目』之書, 講之稍熟於他書. 而筆法之可疑處, 甚多. 又與凡例, 大不相關, 「行狀」所謂‘以未及修正爲恨’者, 果是實語也.”

69) 鄭求福, 1987, 「安鼎福의 史學思想 - 『東史綱目』을 중심으로」『韓日近世社會의 政治와 文化』, p.7.

70) 『東史綱目』 卷首, 「東史綱目凡例」.

“朱夫子, 華削『資治通鑑』爲『綱目』, 定著凡例一卷, 一開卷, 而權衡予奪, 嘹然在目矣. … 今此凡例, 一遵朱子定法, 而『綱目』主華夏, 而統萬國, 其尊無上. 此書, 東國之書也, 地偏一隅, 禮異事殊, 不得不隨而立例. 此大小之勢, 有異也.”

淵(幾道)가 주로 편찬한 『통감강목』의 본문은 주자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례와 어긋나는 서술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⁷¹⁾

<표 1> 『資治通鑑綱目』과 『동사강목』의 범례 비교

『資治通鑑綱目』	『東史綱目』	비 고
統系	統系	
歲年	歲年	
名號	名號	
卽位	卽位	
改元	改元	
尊立	尊立	
崩葬	崩葬	
篡弑	篡弑	
廢徙	廢徙幽囚	
祭祀	祭祀	
行幸	行幸	
恩澤	恩澤	
朝會	朝會	
封拜	封拜	
征伐	征伐	
廢黜	廢黜	통합
罷免		
人事	人事	
災祥	災祥	
	雜例	추가

주자가 『통감강목』을 편찬하면서 강조한 것도 역시 정통론이었다. 주자는 『통감강목』의 「序例」에서 ‘국가의 정통을 바로잡는 것이 天道를 밝히고 人道를 결정하는 것’이라 했고,⁷²⁾ 「범례」에서도 제일

71) 『順菴集』 권3, 書, 「答邵南尹丈別紙」(1771).

“朱子行狀‘綱目’以未及修補爲恨”云, 則其書之不爲十分得盡者, 可知矣。書中筆法, 可疑者甚多。不能枚舉。…大抵, 『綱目』書, 大義雖出於朱子, 而編摩去取, 多委趙幾道輩, 未經朱子手筆者, 盖多而然矣。”

주자가 『資治通鑑綱目』의 본문을 직접 교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익도 같은 생각이었다.(『星湖僊說』 권27, 經史門, 「綱目」)

처음에 ‘統系’를 두어 『통감감목』 편찬의 주목적이 정통을 밝히는데 있었음을 보였다. 주자가 상정한 중국사의 정통은 周(威烈王 23년 ~ 蔡王 59년) → 秦(始皇 26년 ~ 二世 3년) → 漢(高祖 5년 ~ 炎興 원년) → 晉(泰康 원년 ~ 元熙 2년) → 隋(開皇 9년 ~ 大業 13년) → 唐(武德 원년 ~ 天祐 4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戰國 시대의 국가(秦 · 晉 · 齊 · 楚 · 燕 · 魏 · 韓 · 趙)들은 정통을 가진 周가 封國을 했던 ‘列國’으로, 왕위를 찬탈한 漢의 吕后 · 王莽이나 唐의 武后는 ‘篡賊’으로 다루었다.⁷³⁾

주자가 정리한 중국사의 정통론 중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B.C. 202년(高祖 5)에서 263년(炎興 원년)까지로 설정된 漢의 歷年이었다. 실제로 한나라는 220년에 衛의 曹丕가 獻帝를 폐함으로써 멸망했으며 『자치통감』에서는 한이 멸망한 이후에는 衛에 정통이 있었던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주자는 한 왕실의 후예인 蜀漢이 한의 정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한의 역년에 포함시켰으니, 이는 程子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⁷⁴⁾ 안정복은 이러한 주자의 방식을 따라 箕氏 왕조로 이어진 마한의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기자조선과 마한의 역년을 합하여 천년이 넘는다고 했던 것이다.

② 『東史綱目』의 정통론

72) 『資治通鑑綱目』 卷首, 「資治通鑑綱目序例」(1172, 4).

“故嘗過不自料，輒與同志，因兩公四書，別爲義例，增損彙括，以就此編。蓋表歲以首年，而因年以著統，大書以提要，而分注以備言。…雖然，歲周於上而天道明矣，統正於下而人道定矣。大綱槩舉而監戒昭矣。衆目異張而幾微著矣。”

73) 윗책, 卷首, 「資治通鑑綱目凡例」, 統系.

74) 윗글.

“漢. 起高祖五年，盡炎興元年。此用習鑿齒及程子說。自建安二十五年以後，黜衛年，而繫漢統，與司馬氏異。”

西漢의 陳壽와 北宋의 司馬光은 衛를 정통으로 하고, 東晉의 習鑿齒와 南宋의 주자는 蜀을 정통으로 했는데, 이는 각자가 소속된 왕조의 처지를 옹호한 것이었다。(李佑成, 1966,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歷史學報』 31 ; 1976, 『韓國의 歷史認識』 下 재수록, p.357.)

안정복의 한국사 정통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정복은 문화 중심의 華夷觀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명을 받은 聖人이 출현한 국가가 정통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華夷의 구분에서 중국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모두 ‘夷’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늘의 뜻에는 지리적 경계가 있을 수 없으며,⁷⁵⁾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했다고 모두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국가의 정통을 한 집안의 宗統에 비유하여, 자자손손 가통이 전해지던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그 집안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손 중에 도적을 물리치고 舊業을 회복한 자가 나오면 그가 진짜 주인으로 宗統을 계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했다.⁷⁶⁾

안정복은 중국사에서 天命이 羲·農에서 시작하여 堯·舜·禹·湯·文·武까지 완전하게 계승되다가 秦·魏·隋·南北朝·五代 시대에는 동요됨이 있었고, 漢·唐·宋·明의 시대에는 다시 바로 잡아졌으나 元·清의 시대에는 혼란스러워진 것으로 파악했다.⁷⁷⁾ 또한 그는 『동사강목』에서 漢·唐·宋·明은 정통이며 遼·金·元은 이적이라고 규정하고 그 서술 방식을 분명하게 구별했다. 특히 元은 정통을 계승한 국가이긴 하지만 중화의 정통과는 구별해야 하므로 遼·金과 같이 다룬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⁷⁸⁾ 이렇게 본다면 안정복은 주자가 인정한 秦·晉·隋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었다.

75) 『順菴集』 권2, 書, 「上星湖先生書」.

“自古，儒者每嚴華夷之分。若不生于中土，則盡謂之夷，此不通之論也。天意，何嘗有界。”

76) 윗 책, 권12, 機軒隨筆 上, 「華夷正統」.

77) 윗 책, 「夷狄亂華」; 「華夷正統」.

78) 『東史綱目』 卷首, 「東史綱目凡例」, 朝會.

“中國正統，若漢·唐·宋·明，則書曰‘入朝’，曰‘入貢’，曰‘入賀于某’。夷狄若遼·金·元，則雖尊事，而略其辭，只曰‘遣使如某’。[元承正統，而高麗之臣雖別，然以遼·金之例處之者，以別乎中華之正統也.]”

안정복은 특히 明나라를 높이고 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 정통을 가진 황제를 부를 때는 ‘皇帝’라 하고 정통이 없는 황제를 부를 때는 ‘某主’라 하여 그 칭호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그런데 특히 명의 황제는 ‘大明太祖高皇帝’라 하여 극존칭을 썼는데 이는 명나라가 중화의 정통인데다가 조선이 명의 內地와 같은 수준에서 사대를 했기 때문이었다.⁷⁹⁾ 또한 그는 남한산성을 여행하며 병자호란 때 의리를 지킨 三學士를 추모하고 主和를 주도한 崔明吉을 비판하는 시를 지어 對明義理論을 보였고,⁸⁰⁾ 청이 당시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形勢로서 이는 하늘도 어찌지 못한다고 하여 청이 지배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⁸¹⁾

한편 안정복은 한국사의 정통을 檀君 → 箕子 → 馬韓 → (三國) → 新羅(文武王 9년 이후) → 高麗(太祖 19년 이후) → 大朝鮮으로 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단군은 우리 나라를 처음 다스리며 신성한 정치를 실시했고, 기자는 우리 나라에서 中華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펼쳤으며, 마한은 기자를 계승한 箕氏 왕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라와 고려에 정통이 부여된 해를 구별했는데, 신라는 고구려를 합병한 것이므로 통일한 이듬해에, 고려는 도적인 후백제를 평정한 것 이므로 통합한 그 해에 정통이 부여된 것으로 처리했다.⁸²⁾ 또한 안정복은 麗末의 주자학에 의해서 道理가 다시 밝혀졌고, 조선시대에

79) 윗글, 名號.

“中國正統，皇帝有事於本國，首書則曰‘國號皇帝’，屢書則曰‘帝’。○明興以後，書曰‘大明太祖高皇帝’，特例也。[明爲中華正統，而本朝之所尊事，無異內服。其例，亦當如此也。]

80) 『順菴集』 권1, 「修廣州志, 至丙丁事閣筆 潛然謨書一律」(1753) ; 「出南門憶崔遲川當日事 馬上慨然成七節」。

81) 윗책, 권12, 機軒隨筆 上, 「華夷正統」。

“夫天之生物，中夏人物爲首，夷狄次之，禽獸次之。夷狄在半人半獸之間，天理也。理卽至善之所在也。天之爲心，未嘗不欲其至善，而氣化運行，醇漓不濟。則治亂相異，而華夷失禮，勢也。勢之所在，天亦莫奈何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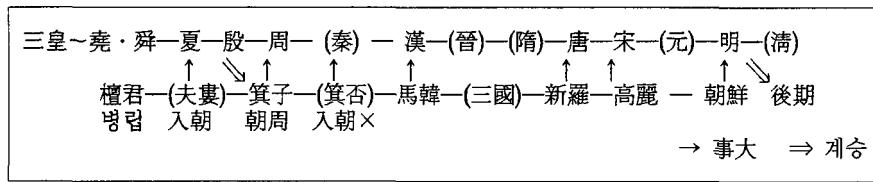
安鼎福의 스승인 李灋은 势·時勢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였다.(韓永愚, 1989, 「18세기 전반 南人 李灋의 史論과 韓國史 理解」『朝鮮後期史學史研究』 pp.193~195.)

82) 『東史綱目』 卷首, 「東史綱目凡例」, 統系 ; 圖上, 「東國歷代傳授之圖」。

는 文敎가 사방에까지 미쳐서 小中華라 불려진 것으로 평가했다.⁸³⁾

이제 안정복이 인식한 중국사와 한국사의 정통론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中國史와 韓國史의 正統論



이를 보면 안정복은 중국사와 한국사의 기본적인 관계를 사대로 파악하고, 우리 나라는 단군조선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정통 왕조와 사대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그는 기자를 중화의 정통을 가진 은나라의 문화를 우리 나라로 전수한 仁賢의 성인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조선이 상고시대부터 중화의 문화를 꾸준히 계승해 왔음을 의미했다.

4. 맷 음 말

지금까지 안정복의 기자 인식을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식과 기자 중심의 정통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문화국가로 성장한 것이 기자가 중화의 문화를 전수하면서 시작되었고, 孔子가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군자국으로 부른 것도 기자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안정복은 周 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지만 기자는 무왕의 신하

83) 『順菴集』 권1, 詩, 「效邵康節經世吟」(1775).

“天生我東，區域殊異，本稟之同，原無所貳。檀君尚矣，箕聖致治，八政所揭，三條垂示。韓穢交亂，三國旋熾，道理重明，爰自麗季。聖朝勃興，文敎四暨，小華有稱，吾道無墜。”

가 된 적이 없이 끝까지 殷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았다. 다만 기자는 주나라의 조회에 참석함으로써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맺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禹가 洛書에서 연역해 낸 洪範은 기자를 통해 周와 朝鮮으로 전수되었고, 기자가 조선에서 시행한 8조의 법규는 바로 흥법의 8政이며 漢나라의 約法三章은 후대에 남았던 3조의 법규가 기자의 후예인 馬韓을 통해 한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은나라의 토지제도인 井田이 기자에 의해 조선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遺制가 평양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화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洪範이 기자를 통해 중국과 조선으로 전해지고 古法인 井田의 원형을 조선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이 가진 중화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안정복은 우리 나라 상고사의 정통이 檀君 → 箕子 → 馬韓으로 이어졌고, 이들 국가는 중국사의 정통을 계승한 夏 · 殷 · 周 · 漢과 사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동사강목』을 편찬하면서 우리 나라를 처음 다스린 성인인 단군의 역년을 편년체로 작성 하려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기자조선에 附錄했다. 또한 기자조선의 후예인 마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기자조선을 약탈한 僮國인 위만조선, 한나라가 설치한 四郡 · 二府, 辰韓 · 弁韓 · 濟 · 猶 · 沃沮를 모두 마한에 부록했다. 즉 안정복은 상고사 서술에서 기자와 그 후예로 이어지는 계통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다.

안정복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事大관계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통 왕조와 사대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사대가 곧 屬國이나 君臣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정복은 우리는 나라는 중국과 산천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별된 독립국임을 전제하면서 중국이 조선을 직접 지배하려는 침략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국의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부국강병책을 강조했다. 그가 『동사강목』에서 역대의 疆域을 치밀하게 연구

한 것도 자국의 영역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조선이 중국과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독립국으로 성장해 왔다는 시각은 비슷한 시기에 정조가 주도한 『宋史筌』의 편찬에 참여했던 李德懋에게 서도 발견된다.⁸⁴⁾

안정복은 조선이 본격적인 문화국가로 성장한 것은 기자가 洪範이나 井田으로 표현되는 중화문화를 전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기자와 그 후예인 마한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가 단군·기자 이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정통성을 계승해 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에서 중화의 정통을 계승한 국가가 사라진 조선후기에는 조선이 유일한 정통 국가임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⁸⁵⁾ 본고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안정복이 이익의 「홍범설」을 『동사강목』의 서문으로 채택한 것은 자신이 이익의 학문을 계승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조선이 문화국가이자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기자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84) 李德懋는 중국과 우리 나라는 朝聘과 冊封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면서도, 독립국의 주권을 위협한 宋의 요구와 武力의 열세 때문에 오랑캐에 복종한 高麗의 실책을 함께 비판했다.『青莊館全書』 권22, 「編書雜稿」 2, 宋史筌高麗列傳. “東方之俗, 仁柔而服屬上國, 文明而倣象中華。夫襄之會塗山, 箕聖之朝成周, 彬彬乎始基之矣。新羅起漢迄唐, 至誠事大, 仁柔文明, 謹然可觀, 高麗繼起, 適會宋興, 自大成王以來, 朝聘之禮, 封冊之典, 歲加月增。高麗之嚮逞, 宋朝之懷柔, 可謂盛矣。至若應誠之假道, 料敵甚迂, 寧宗之絕信, 待人太薄, 何其不善終也? 雖然, 仁柔之過而不自樹立, 甘心事虜, 文明之弊而武力不競, 無路助順, 此亦高麗之失云。”)

85) 안정복이 중국사에만 적용한 『資治通鑑綱目』의儀例를 제후국인 조선의 역사에 적용한 것은 清이 지배하는 중국에는 정통천자가 없다는 反清의식의 투영이자 청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韓永愚, 1988, 「安鼎福의 思想과 東史綱目」『韓國學報』 53 ; 1989,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재수록, pp.313~314.)